

1990년 1월분 도서신고현황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增減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분	1989년도	1990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767,721	1,191,295	423,574	55.17%
	부산지부	544,870	870,110	325,240	59.69%
	대구지부	161,166	207,706	46,540	28.88%
	광주지부	68,314	316,805	248,491	363.75%
	인천지부	209,565	222,378	12,818	6.11%
	대전지부	-	187,640	187,640	ERR
	경기지부	999,563	1,215,896	216,333	21.64%
	전북지부	88,503	149,008	60,505	68.36%
	경북지부	232,850	346,473	113,623	48.80%
	경남지부	338,024	758,993	420,969	124.54%
제주지부	1,797	47,381	45,584	2,536.67%	
감소지역	강원지부	88,964	87,326	(1,638)	-1.84%
	충북지부	139,124	119,799	(19,325)	-13.89%
	충남지부	267,318	134,045	(133,273)	-49.86%
	전남지부	245,403	173,876	(71,527)	-29.15%
합계	4,153,182	6,028,731	1,875,549	45.16%	

(충남지부와 대전지부의 증·감소 현상은 2월 지부가 분리됨으로 생김)

종합평가

-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월분 4백15만3천1백82㎡보다 45.16% 증가(1백87만5천5백49㎡)한 6백2만8천7백31㎡의 실적을 보였다.
- 나. 전년동기비
1월분 합계한 전년도 누계 4백15만3천1백82㎡보다 45.16% 증가(1백87만5천5백49㎡)한 6백2만8천7백31㎡의 실적을 보였다.
- 다. 전월비
지난해 12월분 9백11만6천8백41㎡보다 33.87% 감소(3백8만8천1백1십㎡)한 6백2만8천7백31㎡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增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종별	'89년 12월분	'90년 1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521,347	706,470	185,123	35.51%
다세대주택	264,443	226,691	(37,752)	-14.28%
연립주택	74,420	77,499	3,079	4.14%
아파트	2,879,300	1,988,656	(890,644)	-30.93%
근린생활시설	1,697,284	1,267,343	(429,941)	-25.33%
종교시설	63,063	51,791	(11,272)	-17.87%
의료시설	78,247	13,374	(64,873)	-82.91%
교육연구시설	201,343	71,240	(130,103)	-64.62%
업무시설	980,314	361,078	(619,236)	-63.17%
숙박시설	506,343	138,015	(368,328)	-72.74%
공장	1,200,986	774,135	(426,851)	-35.54%
기타	649,751	352,439	(297,312)	-45.76%
계	9,116,841	6,028,731	(3,088,110)	-33.87%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月分)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독주택	3,902	3,962	684,746	315	322	20,304	20	20	1,420	4,237	4,304	706,470
다세대주택	867	914	223,727	52	52	2,770	4	4	194	923	970	226,691
연립주택	43	74	77,380	1	1	119	0	0	0	44	75	77,499
아파트	154	491	1,971,411	11	13	17,216	1	1	29	166	505	1,988,656
근린생활시설	2,345	2,391	1,169,250	259	262	50,394	171	173	47,699	2,775	2,826	1,267,343
종교시설	43	51	47,784	15	20	3,501	4	4	506	62	75	51,791
의료시설	4	4	5,676	8	8	5,018	2	2	2,680	14	14	13,374
교육연구시설	23	36	53,309	17	20	7,068	28	29	10,863	68	85	71,240
업무시설	109	113	344,964	18	19	13,741	8	8	2,373	135	140	361,078
숙박시설	87	91	85,465	13	13	4,840	8	8	47,710	108	112	138,015
공장	297	509	458,875	180	317	205,091	52	59	110,169	529	885	774,135
기타	366	496	265,631	142	169	65,524	62	64	21,284	570	729	352,439
합계	8,240	9,132	5,388,218	1,031	1,216	395,586	360	372	244,927	9,631	10,720	6,028,731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지부	2,607	2,640	1,174,156	39	40	17,139	0	0	0	2,646	2,680	1,191,295
부산지부	692	909	803,462	114	130	26,672	48	50	39,976	854	1,089	870,110
대구지부	384	402	174,707	204	216	22,893	28	28	10,106	616	646	207,706
인천지부	283	304	205,110	15	19	13,486	14	16	3,782	312	339	222,378
광주지부	156	210	306,377	37	40	6,686	12	12	3,742	205	262	316,805
대전지부	188	188	164,847	16	16	2,808	48	48	19,985	252	252	187,640
경기지부	1,935	2,093	1,087,718	110	146	74,688	71	71	53,490	2,116	2,310	1,215,896
강원지부	187	228	64,410	41	65	19,355	18	21	3,561	246	314	87,326
충북지부	244	283	95,428	33	39	17,596	17	22	6,775	294	344	119,799
충남지부	127	148	122,268	30	31	6,177	23	23	5,600	180	202	134,045
전북지부	171	187	118,689	45	53	26,071	22	22	4,248	238	262	149,008
전남지부	233	261	130,752	93	118	38,956	11	11	4,168	337	390	173,876
경북지부	271	341	240,027	60	75	69,886	23	23	36,560	354	439	346,473
경남지부	660	817	654,240	169	203	51,819	25	25	52,934	854	1,045	758,993
제주지부	102	121	46,027	25	25	1,354	0	0	0	127	146	47,381
합계	8,240	9,132	5,388,218	1,031	1,216	395,586	360	372	244,927	9,631	10,720	6,028,731

건설부 질의회신

질의회신

■ 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판매시설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과 공동주택을 복합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불구하고 시장의 면적이 종전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시장부지)로 결정된 나대지를 의미하는지 또는 기존 재래시장을 의미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가.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5항의 규정은 기존재래시장(건축법령의 제·개정 및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현행 일반주거지역내 용도제한에 부적합한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을 말함)을 공동주택과 재건축(재래시장에 공동주택의 증축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규정중 “종전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 함은 재래시장의 연면적 합계를 말하는 것임.

나. 건축법시행령 제82조 및 동시행규칙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령에서 그

시설입지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시설은 건축법 제32조 제1항·제2항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 바,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은 일반주거지역내에 시설결정이 가능하였으나, '87.12.19 동 규칙 개정시 일반주거지역내 시장의 입지에 관한 결정기준이 삭제되어, 특별히 그 시설입지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건축법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내 시장이 제한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시장의 결정이 불가하도록 되었음. 그러나 동 규칙 개정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장은 당부 도설 30310-21205('88.10.29)호로 개정된 규칙 제56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그 입지기준(용도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하였으므로 동규칙개정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장은 건축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건축법 제32조 제1항·제2항 및 제3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은 가능하므로 '87.12.18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장과 공동주택의 복합용도 건축은 건축법상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다.